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7-28

부 산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누221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1. 주식회사 A
	2. B 주식회사
	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◯◯
	담당변호사 ◯◯◯
피고, 피항소인	◯◯◯◯시 ◯◯◯구청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◯◯
	담당변호사 ◯◯◯, ◯◯◯, ◯◯◯
제 1 심 판 결	부산지방법원 2022. 7. 22. 선고 2021구합22815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3. 31.
판 결 선 고	2023. 4. 28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7-28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 기재 고지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14면 제16행의 "마찬가지이다"를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【(원고들은,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변경후 표준지 외에도 이 사건 토지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표준지들 중에서 추가로 선정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 4개면에 위치한 표준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는 등의 방법으로,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① 이 사건 토지 위에 A, J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동일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②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여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7-28

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, 토지특성 조사에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라 하더라도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아 토지특성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의 해당 내용을 고려하면, 1필지 전체가 동일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필지의 토지특성을 추출하여 이를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 도로접면 조건, 지형형상 조건에 있어 변경후 표준지가 변경전 표준지보다 이 사건 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이 더 유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변경후 표준지가 선정된 것은 적법하다.

③ 도로접면 조건 등에 있어, 이 사건 토지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표준지들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하지 않다.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변경후 표준지 외에도 이 사건 토지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표준지들 중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,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표준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.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특성이 유사한 이 사건 토지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표준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, 이 사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표준지들의 개별공시지가 보다 그리 높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④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○○ 내 대규모의 각 단일 필지에 위치한 K, L, M, N의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각 토지의 인근 4개면의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거나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) 】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7-28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7-28

별지

내역

(단위: 원)

원고	처분(고지)일	과세대상	세목	고지세액	정당세액	취소세액
○○○○ 호텔	2020. 7. 10.	건축물	재산세	561,708,670	513,770,290	47,938,380
			지역자원시설세	518,417,070	474,166,300	44,250,770
			지방교육세	72,013,930	65,867,990	6,145,940
	합계			1,152,139,670	1,053,804,580	98,335,090
	2020. 9. 10.	토지	재산세	1,650,965,934	1,039,232,038	611,733,896
			지역자원시설세	-	-	-
			지방교육세	244,525,540	153,898,370	90,627,170
	합계			1,895,491,474	1,193,130,408	702,361,066
○○○○	2020. 7. 10.	건축물	재산세	535,234,860	510,199,500	25,035,360
			지역자원시설세	493,979,800	470,637,250	23,342,550
			지방교육세	68,619,850	65,428,340	3,191,510
	합계			1,097,834,510	1,046,265,090	51,569,420
	2020. 9. 10.	토지	재산세	1,350,653,518	845,641,429	505,012,089
			지역자원시설세	-	-	-
			지방교육세	200,039,016	125,252,989	74,786,027
	합계			1,550,692,534	970,894,418	579,798,116